

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-386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 .2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사유

○1981.7.1 조례 제36호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나 이는 세무공무원과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와 또한 현재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없으므로 체납액 징수여부 기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, 이로 인한 최근 몇 년간 예산요구 및 계상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